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세상 모든가족 함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http://www.kihf.or.kr	**보도자료**	더 가까이 더 다양하게 가족서비스를 선도하는 KIHF

보도일시	2021. 08. 24.(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2021. 08. 23.(월) 오후 12:00 이후		총 8쪽
배포일자	2021. 8. 23.(월)	담당부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촉진부
담당부장	이미정 (02-3479-5510)	담 당 자	김민정 (02-3479-551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3개 법률구조기관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3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은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3개 기관과 동시에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반영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 이번 협약은 양육비 이행 소송체계의 전국적 지역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면접, 전화, 출장, 서신 등 법률상담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의 사업 공동 추진이다.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통해 201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965억의 양육비 이행금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연도별 이행확보 금액 >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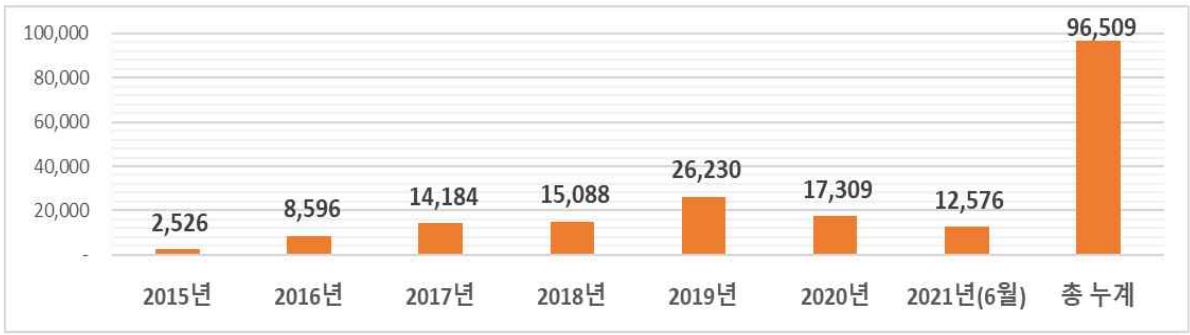

○ 양육비이행 확보를 위한 상담(☎1644-6621)은 2021년 6월 기준 197,696건을 달성하였으며, 양육비에 관한 상담을 전화, 온라인, 카카오톡(AI) 챗봇, 방문, 면접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을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교류를 통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면접교섭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률구조기관과의 업무협력 관계가 굳건해져 양육비 이행법률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및 양육비 이행률을 증대”**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한부모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가족정책서비스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위탁소송기관 업무협약 사진
2. 이행확보지원 신청 접수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절차 안내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홍보 전단
4. 면접교섭 서비스 리플렛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위탁소송기관 업무협약사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협약사진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협약사진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협약사진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협약사진2

붙임2 **이행확보지원 신청 접수 및 상담 절차 안내**

□ 이행확보지원 신청 접수 절차

신청		서류분류 및 보완		시스템 입력		접수처리
• 우편신청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 접수서류 완비여부 확인 • 미비서류 보완요청 • 지침에 의거, 접수대기건 철회 및 철회간주 처리	⇨	• 신청사건 기초정보 시스템 입력	⇨	• 기초사실조사 • 담당부서 배당 및 서류인계

□ 가족 상담 절차

구분	임신출산 갈등 상담	양육비 상담	한부모 상담	심리·정서 상담
지원 내용	• 초기 정보 제공 • 심리·정서 상담 • 기관 연계 등	•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 양육지원(면접교섭) • 추심지원 • 사건 진행 사항 • 법률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 미혼모·부 초기 상담 • 한부모 지원 서비스 • 정부 지원 자격 안내 • 출산 및 양육 • 시설 안내 • 기관 연계 등	• 심리·정서 상담 • 코로나 대응 정부 지원 및 가족 서비스 종합정보 제공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한 심층·대면상담			
지원 방법	전화, 문자,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상담	전화, 대면,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상담	전화, 문자,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상담	전화, 문자,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상담
전화 상담	1644-6621(0번)	1644-6621(1번)	1644-6621(2번)	1644-6621(3번)
	365일 24시간	평일 9~18시	365일 8~22시	365일 8~22시

*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https://pf.kakao.com/_BclwK

붙임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홍보 전단**

여성가족부 한국[illegible]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월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 및 뒷면 참고

지원대상

이혼(미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곤란 / 실직, 폐업으로 소득상실 /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을 보유하신 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차상위계층)인 분

※ 세부요건은 뒷면 체크리스트 참고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9개월(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오프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5층 (서울지방조달청사)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뒷면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체크리스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
1. 이혼/미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가요? ※ 미성년 자녀 : 2021년 기준, 2002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	☐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지만, 양육비를 못받고 계신가요? ※ 집행권원 :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서류(판결문, 부담조서 등) 예) 매월 27일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셨나요?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추심 등 지원 ☎ 1644-6621	☐
4.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고 계신가요?	☐
5.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신가요?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차상위)이신가요?	☐

가구원 수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2021년 기준)	1,544,040원	1,991,975원	2,438,145원	2,878,687원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중 어느 하나라도 가능)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병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④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

위의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2. 집행권원 1통
3.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없을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1통)
4.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위 지원요건 6의 ①~④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

지원절차

01 신청/접수
- 상담
- 신청서 접수

02 서류·요건 확인
- 제출서류 검토
- 요건 적합여부 확인

03 심사 및 지급
-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지급/부지급 통보
- 긴급지원금 지급

04 구상권 행사
- 지원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붙임4 **면접교섭 서비스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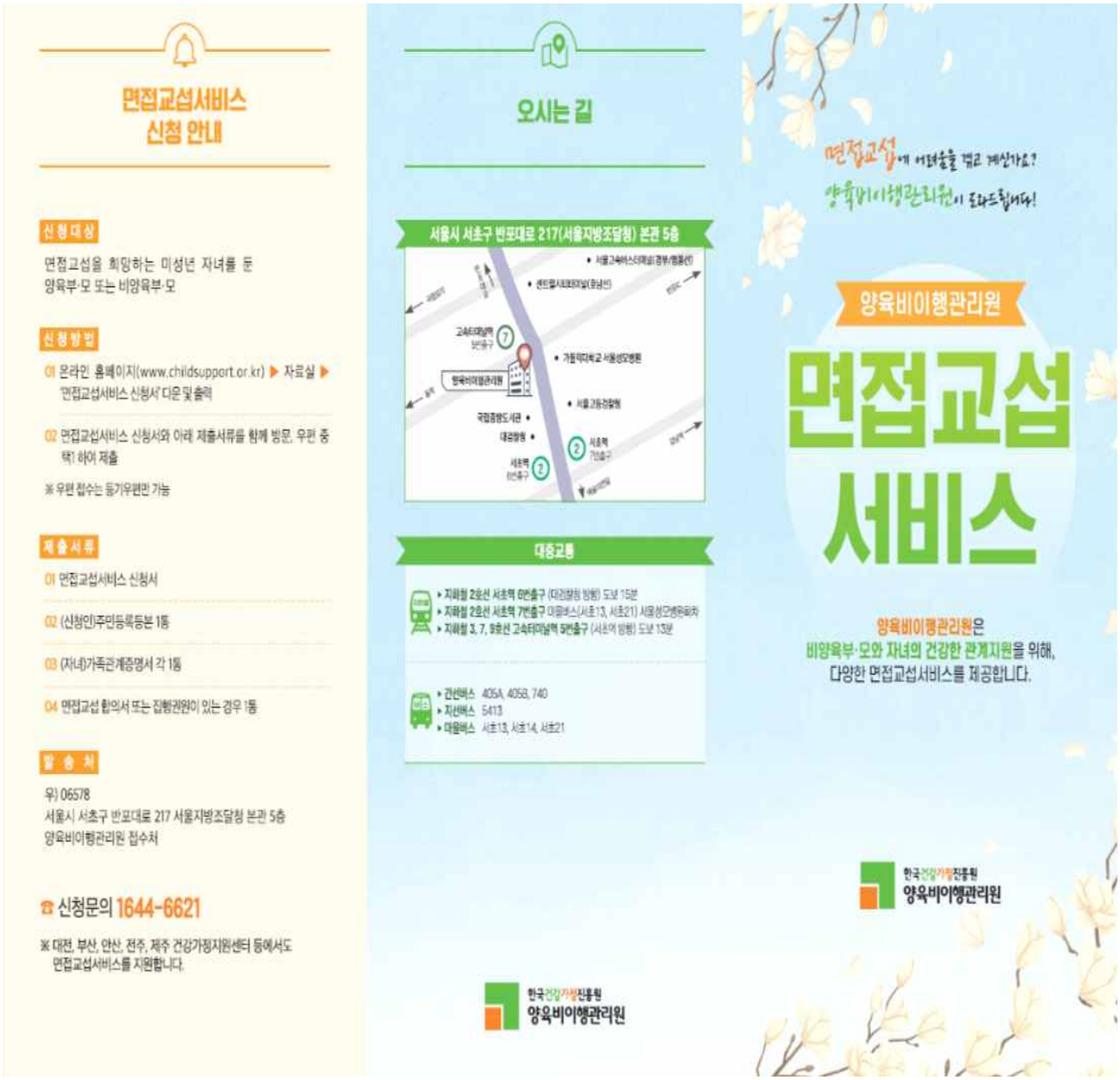

면접교섭서비스 신청 안내

신청대상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미성년 자녀를 둔
양육부·모 또는 비양육부·모

신청방법

01 온라인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자료실 ▶ '면접교섭서비스 신청서' 다운 및 출력

02 면접교섭서비스 신청서와 아래 제출서류를 함께 방문, 우편 중 택1 하여 제출

※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

제출서류

01 면접교섭서비스 신청서

02 (신청인)주민등록등본 1통

03 (자녀)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04 면접교섭 합의서 또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1통

발 송 처

우)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5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 신청문의 1644-6621

※ 대전, 부산, 안산, 전주,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도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본관 5층

대중교통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출구 (대전방향 방향) 도보 15분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출구 (서초IC, 서초13, 서초21) 서울성모병원 방향
- 지하철 3, 7, 9호선 고속터미널역 5번출구 (서초역 방향) 도보 13분

- 간선버스 405A, 405B, 740
- 지선버스 5413
- 마을버스 서초13, 서초14, 서초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도와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 서비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지원을 위해,
다양한 면접교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이란?

면접교섭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전화 통화 및 이메일을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이혼 등 부모 갈등은 자녀가 엄마, 아빠를 마음껏 사랑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자녀는 부모 갈등 속에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속앓이를 하고, 이 아픈 마음은 한 쪽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자와 비양육자는 자녀가 부모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안전한 관계와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기본 원칙

• 자녀의 최상의 이익 보장하기 •

01 자녀 연령, 발달 상황, 학교·학원 등 스케줄을 고려해서 면접교섭 시간, 자녀 인도 장소, 자녀 인도 할 사람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02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 할 때 자녀 진심을 파악하여 적절히 개입 해야 합니다.

03 부모는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 간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04 부모는 자녀와 안정적 상호작용을 위해 노력합니다.

면접교섭 방법

개별면접교섭

면접교섭 중재, 상담,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① **중 재** : 면접교섭 방법·시간·자녀 인도방법 등에 관한 중재 합의 지원

② **상 담** :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자녀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③ **모니터링** :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후 당사자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독려 등

집단면접교섭

상담·교육·체험활동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친해질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 제공

※ 면접교섭서비스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및 서비스 연계 지역센터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면접교섭 이용규칙

01 약속된 시간을 준수합니다.

02 단정한 복장으로 방문합니다.

03 사전 협의 되지 않은 장난감·음식·선물은 반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04 면접교섭 중 자녀에게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05 면접교섭 중 폭행, 폭언, 음주, 흡연, 약물복용을 하면 안됩니다(참여 전후 포함).

※ 이용규칙 위반 또는 면접교섭 중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